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제8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하였다. 2000년 11월 1차 개정¹⁾ 이후 이루어진 이번 지원지침 개정은 시중금리의 하향추세, 남북경협의 불확실성²⁾, 교류협력 촉진지원자금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 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신진저이 두우으 주 수 이느 냐요으 다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개선

첫째, 대출금리체계가 현행 연 6% 고정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³⁾에 따르도록 개편되었다. 이는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설정함으로써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기금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대출비율이 현행 소요자금의 60%(우선지원대상⁴⁾은 70%)에서 소요자금의 70%(우선지원대상은 80%)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번 조정으로 일반 수출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대북 경협기업의 자금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일반 수출입거

- 1) 정부는 2000년 11월 21일 제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통일부 고시 1999.10.27)을 개정하였음. 주요 개정내용은 대출비율 50%에서 60~70%로 확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의 경우 ‘한도승인제 대출방식’ 도입, 대출기간 확대, 일정요건 구비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의 일반기업과 차등화 등이었음.
- 2)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 분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제도화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접촉이 답보 상태에 있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또한,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현황, 높은 물류비용 등은 남북경협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3) 대출승인신청서(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은 대출집행신청서) 접수월 전월 평균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을 적용함. 2001년 12월 평균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은 5.92%임.
- 4) 우선지원대상자는 ①중소기업자 ②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③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 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④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⑤유휴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⑥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⑦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⑧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자임.

래에 대한 금융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출비율이 조정되었고, 특히 우선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의 상환기간이 제품반입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이는 물품을 반출하고 대응물자로 상환받거나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위탁가공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물품을 판매하여 현금 수령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단, 현금으로 회수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대금결제

일로부터 10일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넷째, 신용대출한도의 산정기준이 두 가지 면에서 완화되었다. 우선 '차주별', '개별대출별' 신용한도의 중복적용이 완화되어 '차주별' 신용한도로 단일화되었다. 종래에는 신용도 수준이 평균수준인 신용등급 P4에 해당되어도 순자산의 21%까지 대출하기 위해서는 개별대출시에도 대출금액의 50%에 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었다. 그리고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의 신용한도가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의 신용한도에 상응하게 조정되어 장기신용등급

〈표 1〉

변경후 남북협력기금 지원조건

자금종별	지원한도	이자율	기간	채권보전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우선지원 대상은 80% 범위내)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담보 또는 신용
반출·반입자금대출				
•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우선지원 대상은 80% 범위내)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	2년 이내	담보 또는 신용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우선지원 대상은 80% 범위내)	"	1년 이내	담보 또는 신용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우선지원 대상은 80% 범위내)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담보 또는 신용
•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우선지원 대상은 80% 범위내)	"	2년 이내	담보 또는 신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안내(2001. 12)

〈표 2〉

신용대출한도 산정기준 변경내용

기업신용등급	변경전(차주별 / 개별대출별)	변경후(차주별)
P1	순자산의 30% / 대출금액의 100%	순자산의 60%
P2	순자산의 27% / 대출금액의 100%	순자산의 50%
P3	순자산의 24% / 대출금액의 100%	순자산의 40%
P4	순자산의 21% / 대출금액의 50%	순자산의 30%
P5	순자산의 15% / 대출금액의 25%	순자산의 20%

자료: 통일부 보도참고자료 2001. 12. 20

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경협사업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정부는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비해 여건이 불리한 대북경협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시켜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

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의 사전분담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대북경협기업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車 實】